

4. 建築物의 用途別 分類와 關係法規

建築法 施行令의 附表에는 建築物의 用途에 따라 分類가 되어 있고 이는 建築許可時 許可書의 用途欄에 記入함으로써 당해 用途에 따라 關係法이 適用된다.

이번 호에서는 1987년 3월 1일 현재 同 附表의 改正된 内容과 各 施設의 關係法中 變更되거나 必要한 事項을 실는다.

(1) 建築法施行令中 附表의 改正內容

건축물의 용도분류

④ 근린생활시설

6. 금융업소 · 사무소 · 부동산중개업소 등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⑦ 노유자 시설

1. 아동시설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유치원 · 새마을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⑫ 숙박시설

2.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 가족호텔 · 청소년호텔 · 해상관광호텔 · 휴양콘도미니엄

⑯ 판매시설

3. 상점 :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 4항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와 동일 건축물안에서 제 4항 제 1호의 용도(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와 동항 제 2호 · 제 3호 또는 제 9호의 용도가 복합되어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⑯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 도시가스사업법 · 석유사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 다만, 자가 난방 · 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㉗ 묘지관련시설

1. 화장장 2. 납골당 3.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4. 장례식장

(2) 施設關聯法

◦ 工業配置法

第 2 條(用語의 定義)

1. “工場”이라 함은 製造業(物品의 加工 · 修理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物品製造工程(加工 · 修理工程을 포함한다)을 形成하는 機械 또는 裝置가 設置된 建築物 또는 事業場을 말한다.

◦ 兒童福祉法(1981年 4月 13日)

第 2 條(用語의 定義)

1. “兒童”이라 함은 18 歲 未滿의 者를 말한다.

2. “妊娠婦”라 함은 妊娠中에 있거나 出產後 6月 以内의 女子를 말한다.

3. “要保護兒童”이라 함은 兒童이 그 保護者로부터 遺失 · 遺棄 또는 離脫된 경우, 그 保護者가 兒童을 養育하기에 부적당하거나 養育할 能力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 이 法에 의하여 保護를 받을 兒童을 말한다.

4. “要保護妊娠婦”라 함은 兒童의 健全한 出生을 期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法에 의하여 保護를 받을 妊娠婦를 말한다.

5. “保護者”라 함은 親權者, 後見人 또는 기타의 者로서 兒童을 現在 保護 養育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6. “兒童福祉施設”이라 함은 兒童 및 妊產婦의 福祉를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同法施行令 第2條(兒童福祉施設)

1. 아동상담소
2. 영아시설
3. 육아시설
4. 신체허약아시설
5. 아동일시보호시설
6. 아동직업보도시설
7. 조산시설
8. 모자보호시설
9.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 휴양숙박시설, 야영장 등
10. 교호시설
11. 아동입양위탁시설
12. 정서장애아시설
13. 자립지원시설

◦ 醫療法 ('73. 2. 16, '86. 5. 10.)

第3條(醫療機關) ①이 法에서 “醫療機關”이라 함은 醫療人이 公衆 또는 特定多數人을 위하여 醫療·助產의 業(이하 “醫療業”이라 한다)을 行하는 곳을 말한다.

(2)醫療機關의 種別은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醫院·齒科醫院·韓醫院 및 助產所로 나눈다.

(3)“綜合病院”이라 함은 醫師 및 齒科醫師가 醫療를 행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80人 이상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고 診療科目이 적어도 内科·一般外科·小兒科·産婦人科·放射線科·麻醉科·病理科 및 齒科가 設置되어 있고 각각마다 필요한 專門醫를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1975.12.31 本項改正)

(4)“病院”, “齒科病院” 또는 “韓方病院”이라 함은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각각 그 醫療를 행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20人 이상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다만, 醫科病院의 경우에는 그 入院施設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5)“醫院”, “齒科醫院” 또는 “韓醫院”이라 함은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각각 그 醫療를 행하는 곳으로서, 診療에 支障이 없는 施設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⑥“助產所”라 함은 助產員이 助產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新生兒에 대한 保健과 養護指導를 행하는 곳으로서, 助產에 支障이 없는 施設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第4條 (1981. 12. 31 削除)

◦ 食品衛生法施行令 ('86. 5. 10.)

第7條(營業의 種類)

7. 식품점객·조리판매업

가. 대중음식점영업 : 유홍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탕반·면류·도시락 등을 조리판매(동식판매를 포함한다)하며, 간단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대중음식점과 잣죽·깨죽등 죽류와 인삼차·쌍화차 등 디류(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판매하는 인삼찻집으로서 나목의 유홍음식점 영업 내지 마목의 휴게실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 영업

나. 유홍음식점영업 : 유홍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노래·연주 또는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홍음식점(노래·연주 또는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당·바아·비어홀·살롱·룸살롱·요정과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간이주점 등)

과 무도유홍음식점(손님이 춤을 추는 부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캐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 등) 및 외국인 전용유홍음식점(외국인 및 외국인선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유홍음식점 또는 무도유홍음식점)영업

- 다. 과자점영업 : 갓석을 갖추고 빵류·생과자류·떡류·음료수(주류를 제외한다)·우유·아이스크림류 등을 갖추거나 제조하여 영업소내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는 영업
라. 다방영업 : 갓석을 갖추고 다른 조리판매하거나 우유·청량음료 기타의 음료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
마. 휴게실영업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이나 공항휴게실, 고속도로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대중음식점영업·과자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

第8條(遊興從事者の範囲) ①제 7조 제 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홍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홍접객부
2. 댄서
3. 가수
4. 악기를 다루는 자(관광사업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소내의 음식점에서 안락한 식사분위기의 제공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무용을 하는 자
6. 만담 또는 곡예를 하는 자
7. 유홍사회자

②제 1항 제 1호의 유홍접객부는 손님과 함께 출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홍을 돌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第9條(營業許可를 받아야 할業種 등) ①법 제 2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제 7조 제 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내지 제 3호의 식품운반업(그 자신의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5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 7호의 식품접객·조리판매업으로 한다. 다만,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을 제외한다.

②제 7조 제 1호 머목의 식품가공업은 임가공영업·반제품제조영업·단순가공영업 및 기타 식품가공영업으로, 제 7호 가목의 대중음식점영업은 대중음식점 및 인삼찻집으로, 동호 나목의 유홍음식점영업은 일반유홍음식점·무도유홍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홍음식점으로 각각 구분하여 허가한다.

○ 公衆衛生法('86. 5. 10)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公衆이 이용하는 衛生接客業 기

타衛生關聯營業의 施設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公衆利用施設, 食用水 및 衛生用品의 衛生管理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保健을 위한 衛生水準을 향상시켜 公共福利의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衛生接客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营業을 말한다.

가. 宿泊業 :宿泊에 필요한 施設 및 設備를 갖추고 손님을 宿泊시키는 营業

나. 沐浴場業 :沐浴에 필요한 施設 및 設備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沐浴을 하게 하는 营業

다. 水泳場業 :水泳에 필요한 施設 및 設備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水泳을 하게 하는 营業

라. 理容業 :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容貌를 단정하게 하는 营業

마. 美容業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外貌를 아름답게 꾸미는 营業

바. 遊技場業 :遊技施設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营業(다른 营業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誘致 또는 廣告 등을 目的으로 遊技機具를 設置하여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衛生關聯營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营業을 말한다.

가. 洗濯業 :洗劑, 溶劑등을 사용하여 衣類 기타 纖維製品이나 皮革製品등을 原形대로 洗濯하는 营業

나. 衛生管理用役業 :建築物·施設物등의 清潔維持와 飲用水 供給施設등의 衛生管理를 代行하는 营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营業

다. 衛生處理業 :保健衛生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物品에 대하여 消毒, 殺菌 기타의 方法으로서 大統領이 정하는 营業

3. “衛生用品”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水處理劑 :飲用水를 淨水 또는 消毒하거나 飲用水 供給施設의 酸化防止를 위하여 添加하는 製劑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나. 洗滌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野菜·果實 기타의 食品 또는 그 容器나 食品의 加工·調理器具등을 洗滌하는 製劑로서 大統領이 정하는 것

다. 其他衛生用品 :公衆衛生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衛生管理가 필요한 用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第1項 第1號 각목의 营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細分할 수 있다.

○ 同法施行令('86. 11. 11.)

第3條(衛生接客業의 細分)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접객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 가. 호텔업
 - 나. 콘도미니엄업
 - 다. 여관업
 - 라. 여인숙업
2. 목욕장업
 - 가. 일반목욕장업
 - 1) 공동탕업
 - 2) 가족탕업
 - 3) 한증막업
 - 나. 특수목욕장업
 - 1) 사우나탕업
 - 2) 타키탕업
 - 3)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
3. 수영장업
 - 가. 일반수영장업
 - 나. 특수수영장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거나 호텔투숙객에 한하여 이용되는 수영장업을 말한다)
4. 유기장업
 - 가. 당구장업
 - 나. 전자유기장업
 - 1) 성인용 전자유기장업
 - 2)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
 - 다. 종합유원시설업(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위락지 등에서 주행식 유기기구, 고정식 유기기구, 스포츠·관람형 유기기구를 각 2종이상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 라. 기타유기장업(주행식 유기기구, 고정식 유기기구, 스포츠, 관람형 유기기구, 기타 대중오락을 위한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종합유원시설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법은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施行한다.

第2條(다른法律의 廢止 및 改正등) ①다음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公衆沐浴場業法
2. 宿泊業法
3. 理容師 및 美容師法
4. 遊技場業法

(2) 觀光事業法 중 다음과 같이改正한다(해당條文 加

除整理하였음)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法律에 의한 大統領令 및 部令은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 및 部令이 制定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法律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廢止되는 法律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3條(營業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當時 附則第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각 法律에 의하여 다음표의 左쪽란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은 이 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廢止되는 法律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宿泊業法에 의한 宿泊業 許可	宿泊業 許可 또는 申告
公衆沐浴場業法에 의한 沐浴場業 許可	沐浴場業 許可 또는 申告
公衆沐浴場業法에 의한 水泳場業 許可	水泳場業 申告
理容師 및 美容師法에 의한 理容所開發申告	理容業 申告
理容師 및 美容師法에 의한 美容所開設申告	美容業 申告
遊技場業法에 의한 遊技場業 許可	遊技場業 許可 또는 申告

② 이 法 施行當時 洗濯業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衛生管理用役業·衛生處理業·衛生用品製造業을 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까지는 第4條 第2項,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해당 营業 또는 製造業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廢止되는 法律에 의한 處分 및 繼續중인 行爲에 관한 經過推置) 이 法 施行전에 附則 第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각 法律에 의하여 행한 條件附許可·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行爲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行爲로 본다.

第5條(營業者團體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遊技場業에 의하여 設立된 营業者團體는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團體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의 定款이 第3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과 다를 때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 이내에 定款을 變更하여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6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

한 附則 第 2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각 法律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각 法律에 의한다.

○ 都 · 小賣業振興法 ('86. 12. 31)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市場**”이라 함은 一定區域안의 建物 또는 地下道에 設置된 店舖施設에서 都 · 小賣業者 및 이를 지원하는 用役業者가 계속적으로 商品을 賣買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營業場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의 小規模店舗가 多數를 차지하는 營業場을 말한다.
2. “**定期市場**”이라 함은 一定區域안에서 多數의 需要者와 供給者가 定期的 또는 季節的으로 모여 商品을 賣買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場所를 말한다.
3. “**大規模小賣店**”이라 함은 一定區域안의 建物에서 小賣業者가 近代의in 施設과 運營體制를 갖추고 直營 또는 貨貸의 形態로 商品을 小賣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營業場을 말한다.
4. “**都賣센타**”라 함은 一定區域안의 建物에서 都賣業者가 近代의in 施設과 運營體制를 갖추고 商品을 都賣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營業場을 말한다.
5. “**連鎖化事業**”이라 함은 多數의 同一業種의 小賣店舗를 直營하거나 多數의 同一業種의 小賣業者와의 契約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商品을 供給하여 經營을 指導하는 事業을 말한다.
6. “**商店街**”라 함은 一定範圍안의 街路에서 大統領이 정하는 數 이상의 都 · 小賣業店舗 또는 用役店舗가 近接하여 있는 地區를 말한다.
7. “**割賦販賣**”라 함은 販賣者가 商品의 代金을 2月 이상의 期間에 걸쳐 3回 이상 分割(이하 “**分割**”이라 한다)하여 受領하는 것을 조건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商品(이하 “**割賦販賣商品**”이라 한다)을 購買者에게 販賣하는 것을 말한다.
8. “**債務保證割賦販賣**”라 함은 購買者가 割賦販賣商品의 代金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分割辨濟하는 것을 조건으로 金錢을 借入할 경우에 販賣者가 購買者的 金錢債務를 保證하는 것을 조건으로 割賦販賣商品을 購買者에게 販賣하는 것을 말한다.
9. “**訪問販賣**”라 함은 販賣者가 營業場외의 場所에서 購買者的 申請을 받아 買賣契約을 締結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商品(이하 “**訪問販賣商品**”이라 한다)을 購買者에게 販賣하는 것을 말한다.
10. “**通信販賣**”라 함은 販賣者가 郵便 기타 商工部令이 정하는 手段(이하 “**郵便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購買者的 申請을 받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商品(이하 “**通信販賣商品**”이라 한다)을 購買者에게 販賣하는 것을 말한다.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 2 條(다른 法律의 廢止) 市場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 3 條(既存市場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市場法 第 6 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常設市場은 그 許可를 받은 業態에 따라 이 法 第 6 條 第 15 條 또는 第 19 條의 規定에의한 市場 · 大規模小賣店 또는 都賣센타로 許可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 당시 市場의 管理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第 7 條의 規定에 의한 市場管理者가 될 法人이 指定되거나 組合이 組織될 때까지 당해 市場의 管理를 담당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 당시 市場의 管理를 담당하고 있는 者가 第 7 條 第 1 項 第 1 號의 規定에 의한 法人으로서의 要件를 갖추어 法人設立登記를 하였을 경우에는 管轄市 · 道知事은 그 法人을 당해 市場의 管理者로 指定한다.

第 4 條(市場등의 開設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이미 建築許可 또는 建築物의 用途變更許可를 받은 者는 第 6 條(第 15 條 및 第 19 條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條에 의한 開設許可를 申請할 수 있다.

第 5 條(連鎖化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市場法 第 14 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連鎖化事業者는 이 法 第 25 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連鎖化事業者로 본다.

第 6 條(割賦販賣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이미 체결된 割賦販賣 및 債務保證割賦販賣 契約에 대하여는 第 33 條 내지 第 35 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 7 條(經營診斷機關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市場法 第 15 條 및 同法 第 17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經營診斷機關 또는 流通研修機關은 이 法 第 43 條 第 1 項 및 第 44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市場法 第 17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販賣士의 자격이 있는 者는 이 法 第 45 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士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 8 條(事業者團體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民法 第 32 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百貨店協會 · 韓國市場協議會 · 韓國수퍼체인協會 · 全國中小商人連鎖店協會는 각자 그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 第 46 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事業者團體가 承繼할 수 있도록 商工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事業者團體設

立파 동시에 民法 중 法人의 解散 및 清算에 관한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事業者團體가 承繼한다.

第 9 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에서 附則 第 2 條에서 廢止되는 市場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에 그에 해당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廢止되는 法律의 規定에 遵守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각條를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 10 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전의 이 法 附則 第 2 條에서 廐止되는 市場法에서 정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公演法施行令 ('82. 3. 11)

第 1 章 公演者登錄

第 1 條 (登錄申請)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자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2 條 (登錄의例外) 법 제 3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 및 종교단체
2. 성부·투자기관(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
3.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영화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5. 일본기본법에 의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언론 기관, 방송국 및 통신사
6. 주한 외국의 공관 및 문화 단체
7. 자신 또는 구호의 사업으로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
8. 기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공연을 행하는 자로서 문화공보부장관으로 성하는 자

第 3 條 (登錄證) 문화공보부장관은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공연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공연자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 4 條 (變更登錄) 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자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5 條 (登錄證의 再交付)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6 條 (廢業등 申告) 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등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폐업등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2 章 公演場設置許可

第 7 條 (許可申請) 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신설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허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8 條 (許可의例外) ①법 제 7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은 다음의 시설 또는 장소를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의 시설 또는 광장
2. 공연에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객석이 300석 이하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공연장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행할 수 있는 호텔·유흥음식점등 접객업소
5. 음반을 대중에게 무료로 시청하게 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제 1 항 제 1 호(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임시로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연기간은 서울특별시·직할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 또는 읍·면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고, 월간의 총 공연일 수는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공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
2. 자신 또는 구호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3.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없는 곡예등 특수한 공연을 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관광휴양지구 안에서 관광객을 위한 공연을 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시설